

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!

사회보험료 지원방안

- ❖ 두루누리 **사회보험료** 지원 대상 · 수준 상향
 - ▶ 지원대상 기준보수 (현행) 월 보수 140만원 미만→(개선) **190만원 미만**
 - ▶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(현행) 60%→(개선) **신규 90% (5~10인미만 80%)**
- ❖ **건강보험료 50% 경감** (18년 한시)
 - ▶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
- ❖ 4대 보험 신규가입시 **2년간 세액공제**
 - ▶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%

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

13.8만원→1.7만원으로 경감

- ▶ 5인 미만 사업체, 월 보수 157만원 (최저임금 100%)
노동자 1인 기준, 산재보험 제외

4대 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❖ **고용보험**
 - ▶ 사업주: 고용창출 ·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
 - ▶ 노동자: 실업급여 · 훈련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
- ❖ **산재보험**
 - ▶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· 형사적 부담 해소
 - ▶ 산재요양부터 완치까지 의료비, 휴업급여 등 지원
- ❖ **건강보험**
 - ▶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
 - ▶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
- ❖ **국민연금**
 - ▶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
 - ▶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



사장님, 인건비 걱정은
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.

최저임금 해결사

일자리 안정자금





업종에 관계없이
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!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- ▶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- ❖ **30인 미만 고용 사업주**
 - ▶ 공동주택 경비 ·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- ❖ **최저임금 준수 조건**
 - ▶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
- ❖ **월보수 190만원 미만**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- ❖ **정규직 · 계약직 · 일용직 ·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**
 - ▶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)은 지원제외
- ❖ **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**
 - ▶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



1회 신청으로
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!

지원금액

- ❖ **노동자 1인당 월13만원**
 - ▶ 월중 입 ·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- ❖ **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**

지급방식

- ❖ **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**
 - ▶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
- ❖ **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**
- ❖ **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**



집, 일터에서 바로
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!

신청서 접수

- ❖ **온라인**
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- ❖ **방문 · 우편 · 팩스 (3,940개소)**
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
명칭 (운영기관)

사이트 주소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(국민연금공단) | www.4insure.or.kr |
|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근로복지공단) | total.kcomwel.or.kr |
| 국민건강보험 EDI (국민건강보험공단) | edi.nhis.or.kr |
| 국민연금 EDI (국민연금공단) | minwon.nps.or.kr |
| 고용보험 EDI (한국고용정보원) | www.ei.go.kr |

문의 · 상담

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☎ 고용센터 1350

